



행정부 법정 심리 공청회 사무국

캘리포니아 주

특별 교육부

요청서 작성 후

제출 방법:

미우정국 우편 또는

암호화된 전자문서

e-File 로 제출

행정부 심리 공청회

사무국 특수교육부에

전송하십시오.

중재 개시 요청서 (및 필요 시, 적법 절차에 의한 심리 공청회 최초 일정 연기 요청)

행정부 법정 심리 공청회 사무국(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OAH)은 사건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며, 이에 당사자들의 지불 부담이 없는 훈련 받은 중재자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중재는 자발적으로 진행되며, 비밀이 유지되며, 중립적 중재자에 의해 상호 협조 하에 비공식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특수 교육 관련 중재의 경우, 대다수의 사건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안에 도달하는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은 협력하여 중재 일자를 선택할 것을 권장하며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요청 당사자는, 본 양식 대신 서신이나 동의안으로 대체하여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대변을 받지 않는 사건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일정 명령 고지에 게재된 사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중재 설정에 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공동으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 우정국 우편 또는 사무국 웹사이트 <https://www.applications.dgsapps.dgs.ca.gov/OAHSFTWeb> 에서 암호화된 전자문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OAH는 중재일 요청 접수 후, 근무일 기준 2 일 이내에 처리 진행 상황을 사건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요청하는 중재 일자에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중재를 요청하는 날짜로부터 근무일 기준 최소 10일 전에 요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근무일 기준 10일 간의 여유를 두지 않고 요청하는 경우, 요청 당일 이용 공간 여부 기준으로 승인됩니다. 중재일 요청 접수가 가능한 마지막 일자, 그리고 요청이 포함되는 경우, 연기 일정 요청 가능 마지막 일자는 해당 사건의 사전공청회 회의 진술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사전공청회 회의 진술서 제출 마감일 이후에 요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가능 마지막 일자 전에 접수가 불가능했던 적법한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행정부 법정 심리 공청회 사무국

캘리포니아 주

특별 교육부

요청서 작성 후

제출 방법:

미우정국 우편 또는

암호화된 전자문서

e-File 로 제출

행정부 심리 공청회

사무국 특수교육부에

전송하십시오.

중재 개시 요청서 (및 필요 시, 적법 절차에 의한 심리 공청회 최초 일정 연기 요청)

중재는 일반적으로 화요일, 수요일 및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월요일 또는 금요일로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공간 이용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승인됩니다. 로스 앤젤레스 연합 교육지구와의 중재는 오전 9시 또는 1시 30분에 시작되며, 이 외의 모든 중재 일정은 오전 9시 30분 시작입니다.

적법한 사유 없이 중재 일정을 취소하는 경우, 항 후 중재 재조정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은 일정이 예정된 주의 전 주 금요일에 정오까지, 또는 취소 요청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이를 OAH에 통보해야 합니다. 조정 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 전에 요청한 중재를 취소한 적법한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중재를 요청하는 일자가 법원 일정에 고지된 심리공청회보다 후일인 경우, 당사자들은 OAH에 사전 공청회 회의 일정 및 심리 공청회 일정을, 연기 요청을 포함하여, 제안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아래 첨부한 양식을 이용하여 중재 개시 및 적법 절차에 의한 심리 공청회 최초 일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 때, 중재 및 심리 공청회가 열리는 지역 교육 기관 또는 교육 지구의 소재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OAH 요청서 접수 마감일은 일정 명령 고지에 명시된 일자를 숙지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사건 연기 요청 일정에 동의하여, 당사자들이 중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연방 명령에 따른 판결 통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당사자들은 화요일을 첫 개시일로, 연속되는 3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심리공청회 진행 일수는 행정법 판사의 재량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사전공청회 회의 때 논의됩니다. 심리공청회는 이외의 명령이 없는 한, 개정 첫 날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며, 이 후 일자의 개정 시간은 매일 오전 9시입니다. 심리 공청회 일정은 요청한 중재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될 수



행정부 법정 심리 공청회 사무국

캘리포니아 주

특별 교육부

요청서 작성 후

제출 방법:

미우정국 우편 또는
암호화된 전자문서
e-File 로 제출

행정부 심리 공청회
사무국 특수교육부에
전송하십시오.

중재 개시 요청서 (및 필요 시, 적법 절차에 의한 심리 공청회 최초 일정 연기 요청)

있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사전공청회 회의: 귀하가 선택한 심리공청회 일정 첫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에서 10일
이내의 월요일 또는 금요일로 사전 공청회 회의 진행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전 공청회 회의는 오전 10시, 오후 1시, 또는 오후 3시에 시작됩니다. 단, 매월 첫째
월요일로 고지된 사전공청회 회의는 오후 1시와 오후 3시에 시작됩니다.



행정부 법정 심리 공청회 사무국

캘리포니아 주

특별 교육부

요청서 작성 후
제출 방법:

미우정국 우편 또는
암호화된 전자문서
e-File 로 제출

행정부 심리 공청회
사무국 특수교육부에
직접 전달하십시오

중재 개시 요청서 (및 필요 시, 적법 절차에 의한 심리 공청회 최초 일정 연기 요청)

학생성명 (필수기재):

사건 번호 (필수기재):

중재 개시 요청일자

중재 개시 요청일자:

요청일 대체 가능 일자:

장소:

적법 절차에 의한 심리 공청회 일정 연기 요청

본 항목은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 조정한 중재 요청 일자가 현재 고지된 심리공청회보다 후일인 경우, 기존의 심리 공청회 일정을 연기하고자 요청하는 때에만 작성합니다.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심리공청회 일자는 새로 요청하는 중재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다른 모든 연기 요청은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심리공청회 요청 일자:

사전공청회 회의 일자 및 시간:

[요청 일자 선택 시, 안내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사건 당사자들 모두가 선택한 중재일자와 심리공청회 일자에 동의해야 합니다. 모든 심리 공청회는 ALJ (행정법판사)의 재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단위로 연기가 가능합니다. 심리 공청회는 제외 적용 명령 고지가 없는 한, 개정 첫 날은 오전 9시 30분에, 이 외의 일정은 모두 오전 9시에 개정됩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적법 절차에 의한 심리 공청회 일정을 변경하는데 동의하는 것은, 판결문 통지일 연장에 동의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학부모/ 대변인 서명

일자

교구/ 기관 대변인 서명

일자

기타 관계자 대변인 서명

일자

DGS-OAH 48 (캘리포니아 법원 규정, 규정
3항 이하 1332(d)) (개정. 1/18)